

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홍보담당관

제정 2020. 2. 28 조례 제157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천시 홍보대사의 위촉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이천시 홍보대사(이하 “홍보대사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
3.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·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4. 그 밖에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3조(위촉 등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
2. 시의 경제적,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
3.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품위유지)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하고,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촉해제)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
1.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

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

2.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

제6조(운영)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,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.

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.

제7조(예우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,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견을 갖추어 예우한다.

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